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097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나경원 · 김은혜 · 고동진  
김성원 · 서지영 · 박충권  
구자근 · 박준태 · 박성민  
조배숙 · 김재섭 · 송석준  
최은석 · 주진우 · 김승수  
백종현 · 강승규 · 김미애  
김대식 · 박덕흠 · 곽규택  
김석기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국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제26조의5 등에 따른 임용 형식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의5(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또는 임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예정된 업무

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신원조사 회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또는 임명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분장 조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3급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15조의4(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국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제26조의5 등에 따른 임용 형식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②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u></p> |
| <p><u>&lt;신 설&gt;</u></p> | <p><u>제15조의5(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u></p>                                                                                                                                                                                                                                                            |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또는 임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예정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신원조사 회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또는 임명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분장 조정 등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  
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3급 이상의 선거관리위원  
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의결  
을 거쳐야 한다.